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7408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 C은 40%, 원고 B, A은 각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가족관계에 있다.

나. D는 2011. 9. 10.경 지방세 9,588,380원(재산세 등 본세 5,463,230원, 가산금 4,125,150원)을 체납하였다.

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9. 20. D 소유의 [redacted] [redacted]구 E 대 496.1㎡와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을 2011. 11. 28.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7. 위 체납세액 9,588,38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2017. 1. 13. 완납되었다.

4) 피고는 2017. 2. 15.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체납 지방세 합계 105,072,31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3. 2. 피고가 2011. 11. 7. 교부청구한 9,588,380원만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 2018. 6. 19.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매각기일 이전에 지방세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지방세 채권 중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9,588,380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에도 배당기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과실 내지 업무해태로 지방세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 외에 앞으로 체납이 예상되는 지방세까지 교부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2011. 11. 7. 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납세액 9,588,380원의 교부를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또한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한 9,588,380원만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피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의 과실 내지 업무해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D는 2016. 12. 5. 해산간주되었으므로(을 1호증), D가 체납한 지방세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별지 1

원고들에 대한 처분

처분일	상대방(원고)	귀속연도	재산세(건축물) (단위: 원)	재산세(토지) (단위: 원)	주민세 (법인균등분) (단위: 원)
2018. 6. 19.	A	2013	1,211,300	1,578,100	9,640
		2014	1,133,510	1,510,460	9,640
		2015	1,013,980	1,422,960	
		2016	890,740	1,312,090	
	B	2013	1,211,300	1,578,100	9,640
		2014	1,133,510	1,510,460	9,640
		2015	1,013,980	1,422,960	
		2016	890,740	1,312,090	
	C	2013	3,230,350	4,208,420	25,780
		2014	3,022,880	4,028,130	25,780
		2015	2,704,100	3,794,750	
		2016	2,375,480	3,499,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8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